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7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 I. 제안이유

-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II. 주요내용

- 2016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39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7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48백만원이 증액된 389,019백만원, 특별회계는 225백만원이 증액되어 64,373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112백만원, 조정교부금 4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82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3백만원,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8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0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6,574백만원, 재무활동 △16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859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33백만원, 재무활동 358백만원 임.

### Ⅲ. 예산개요

#### 가. 회계별 예산규모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3,391,97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29%인 5,773,009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389,019,117천원으로 5,547,658천원(1.45%)이

○ 특별회계는 64,372,860천원으로 225,351천원(0.35%)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음.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b>총</b>	<b>계</b>	<b>453,391,977</b>	<b>100.00</b>	<b>447,618,968</b>	<b>5,773,009</b>	<b>1.29</b>
일	반 회 계	389,019,117	85.80	383,471,459	5,547,658	1.45
특	별 회 계	64,372,860	14.20	64,147,509	225,351	0.35
	공기업특별회계	35,600,454	7.85	35,550,454	50,000	0.1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600,454	7.85	35,550,454	50,000	0.14
	기타특별회계	28,772,406	6.35	28,597,055	175,351	0.6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2,274	0.17	813,101	△38,827	△4.7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60,510	0.19	860,510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1,136	0.02	71,136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51,544	0.12	671,166	△119,622	△17.82
	수질개선특별회계	26,159,841	5.77	25,826,041	333,800	1.29
	주택사업특별회계	250,447	0.06	250,447	0	0.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4,654	0.02	104,654	0	0.00

##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5,547,658천원이 증액된 389,019,117천원으로써

○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111,506천원(0.06%), 조정교부금등 400,000천원(5.87%)  
보조금 4,828,463천원(4.12%)이 각각 증액 되었고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207,689천원(1.10%)이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고증감	
		예산액	%		증감액	%
<b>합 계</b>		<b>389,019,117</b>	<b>100.00</b>	<b>383,471,459</b>	<b>5,547,658</b>	<b>1.45</b>
자 채 수 입	소 계	44,726,279	11.50	44,726,279	0	0.00
	지방세수입	24,860,436	6.39	24,860,436	0	0.00
	세외수입	19,865,843	5.11	19,865,843	0	0.00
이 전 수 입	소 계	310,172,653	79.73	304,832,684	5,339,969	1.75
	지방교부세	180,909,000	46.50	180,797,494	111,506	0.06
	조정교부금등	7,220,000	1.86	6,820,000	400,000	5.87
	보조금	122,043,653	31.37	117,215,190	4,828,463	4.12
지방채		15,025,000	3.86	15,025,00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095,185	4.91	18,887,496	207,689	1.10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인 5,547,658천원이 증액된 389,019,117천원으로써
  - 정책사업비는 6,574,002천원(2.09%)이 증액 되었으며
    - 재무활동 △167,489천원(△0.82%)
    - 행정운영경비 △858,855천원(△1.77%)이 각각 감액 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389,019,117	100.00	383,471,459	5,547,658	1.45
정 책 사 업	321,139,578	82.55	314,565,576	6,574,003	2.09
재 무 활 동	20,171,107	5.19	20,338,596	△167,489	△0.82
행정운영경비	47,708,432	12.26	48,567,287	△858,855	△1.77

○ 기능별 세출예산은

- 일반공공행정     △494,790천원(△2.55%)
- 공공질서및안전   106,616천원(0.72%)
- 교육                △13,115천원(△0.54%)
- 문화및관광        5,514,240천원(9.14%)
- 환경보호           △54,988천원(△0.24%)
- 사회복지           △751,570천원(△1.46%)
- 보건                862,990천원(10.01%)
- 농림해양수산      2,015,705천원(3.37%)
- 산업·중소기업     △72,452천원(△1.06%)
- 수송및교통        △174,431천원(△0.63%)
- 국토및지역개발    101,874천원(0.18%)
- 예비비             △633,566천원(△16.75%)
- 기타분야            △858,855천원(△1.77%)이 각각 편성되었음.

## 《기능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b>합 계</b>	<b>389,019,117</b>	<b>100.00</b>	<b>383,471,459</b>	<b>5,547,658</b>	<b>1.45</b>
일반공공행정	18,909,809	4.86	19,404,599	△494,790	△2.55
공공질서및안전	14,918,482	3.83	14,811,866	106,616	0.72
교육	2,424,491	0.62	2,437,606	△13,115	△0.54
문화및관광	65,839,606	16.92	60,325,366	5,514,240	9.14
환경보호	23,217,193	5.97	23,272,181	△54,988	△0.24
사회복지	50,630,902	13.02	51,382,472	△751,570	△1.46
보건	9,480,034	2.44	8,617,044	862,990	10.01
농림해양수산	61,805,057	15.89	59,789,352	2,015,705	3.37
산업·중소기업	6,778,586	1.74	6,851,038	△72,452	△1.06
수송및교통	27,518,533	7.07	27,692,964	△174,431	△0.63
국토및지역개발	56,640,160	14.56	56,538,286	101,874	0.18
예비비	3,147,832	0.81	3,781,398	△633,566	△16.75
기타	47,708,432	12.26	48,567,287	△858,855	△1.77

###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안전건설과 61,099,105천원(15.71%)
- 자치행정과 49,586,301천원(12.75%)
- 문화관광과 47,047,292천원(12.09%)
- 주민생활지원과 46,957,447천원(12.07%) 순으로 편성 되었으며
- 기정예산 대비 올림픽운영과 14.94%, 문화관광과 13.41%가 증액 편성 되었음.

## 《조직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b>합 계</b>	<b>389,019,117</b>	<b>100.00</b>	<b>383,471,459</b>	<b>5,547,658</b>	<b>1.45</b>
본 청	322,010,993	82.78	317,951,614	4,059,379	1.28
기획감사실	8,275,137	2.13	9,194,239	△919,102	△10.00
문화관광과	47,047,292	12.09	41,483,730	5,563,562	13.41
주민생활지원과	46,957,447	12.07	47,619,311	△661,864	△1.39
종합민원과	1,889,467	0.49	1,889,585	△118	△0.01
자치행정과	49,586,301	12.75	50,506,815	△920,514	△1.82
재무과	2,812,567	0.72	2,912,903	△100,336	△3.44
경제체육과	22,689,397	5.83	22,912,477	△223,080	△0.97
환경위생과	15,392,307	3.96	15,002,295	390,012	2.60
산림과	14,336,335	3.69	14,281,869	54,466	0.38
안전건설과	61,099,105	15.71	60,963,920	135,185	0.22
도시주택과	29,715,792	7.64	29,725,498	△9,706	△0.03
올림픽추진단	1,582,596	0.41	1,582,596	0	0.00
올림픽운영과	5,923,574	1.52	5,153,574	770,000	14.94
올림픽시설과	14,703,676	3.78	14,722,802	△19,126	△0.13
직속기관	51,175,314	13.15	49,169,085	2,006,229	4.08
보건의료원	9,311,193	2.39	9,213,203	97,990	1.06
농업기술센터	41,864,121	10.76	39,955,882	1,908,239	4.78
의회사무과	826,022	0.21	826,022	0	0.00
상하수도사업소	9,228,637	2.37	9,678,587	△449,950	△4.65
읍 면	5,778,151	1.49	5,846,151	△68,000	△1.16

○ 성질별 세출예산은

- 인건비     △129,701천원(△0.30%)
- 물건비     △184,547천원(△0.68%)
- 경상이전    544,891천원(0.55%)
- 자본지출   6,118,070천원(3.22%)
- 내부거래    △380,160천원(△2.41%)
- 예비비및기타 △420,895천원(△7.19%)이 각각 편성 되었음.

《성질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b>합 계</b>	<b>389,019,117</b>	<b>100.00</b>	<b>383,471,459</b>	<b>5,547,658</b>	<b>1.45</b>
인 건 비	42,651,621	10.96	42,781,322	△129,701	△0.30
물 건 비	27,079,120	6.96	27,263,667	△184,547	△0.68
경 상 이 전	99,677,647	25.62	99,132,756	544,891	0.55
자 본 지 출	196,148,404	50.42	190,030,334	6,118,070	3.22
보 전 재 원	2,666,000	0.69	2,666,000	0	0.00
내 부 거 래	15,367,071	3.95	15,747,231	△380,160	△2.41
예비비및기타	5,429,254	1.40	5,850,149	△420,895	△7.19

다. 특별회계

- 2016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4,372,86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351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 공기업특별회계는 35,600,45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4%인 50,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28,772,40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1%인 175,351천원이 증액 되었음.

##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특별회계		64,372,860	100.00	64,147,509	225,351	0.35
공기업특별회계		35,600,454	55.30	35,550,454	50,000	0.1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600,454	55.30	35,550,454	50,000	0.14
기타특별회계		28,772,406	44.70	28,597,055	175,351	0.61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2,274	1.20	813,101	△38,827	△4.7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860,510	1.34	860,510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1,136	0.11	71,136	0	0.00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551,544	0.86	671,166	△119,622	△17.82
	수질개선특별회계	26,159,841	40.64	25,826,041	333,800	1.29
	주택사업특별회계	250,447	0.39	250,447	0	0.00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4,654	0.16	104,654	0	0.00

### 라. 계속비사업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0건으로 총 24건임.
- 총사업비는 441,193,859천원이며, 2015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59,236,340천원이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74,136,840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사업비는 107,820,679천원임.

### 마.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58건, 특별회계 13건으로 총 171건임.
- 예산액은 100,410,004천원이고, 지출액은 36,347,111천원이며 이월액은 64,055,010천원이며, 7,883천원은 불용액임.



바. 주요사업현황(1억원 이상)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4개사업	19,096,735	9,546,926	9,549,809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비	670,000	550,000	120,000	자체
문화관광과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2,218,200	1,518,200	700,000	국고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8,300,000	3,400,000	4,900,000	국고
주민생활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1,281,514	1,150,720	130,794	국고
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활동비	318,000	70,000	248,000	자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수질 검사수수료	145,882	27,841	118,041	자체
안전건설과	풍수해 보험사업	330,000	230,000	100,000	자체
	홍정천 홍정 제3교 실시설계	150,000	0	150,000	자체
올림픽운영과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1,096,000	320,000	776,000	국고
농축산과	2014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마을 지원	450,000	0	450,000	도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300,000	0	300,000	도비
기술지원과	조건불리 직불제	1,859,551	1,692,396	167,155	국고
	밭농업 직불금	766,805	587,769	179,036	국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1,210,783	0	1,210,783	국고

## IV. 검토결과

### 1. 추경예산안 규모

-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453,39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73백만원이 증액 되었음.
  - 일반회계는 389,01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48백만원(1.45%)
  - 특별회계는 64,3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백만원(0.35%)이 각각 증액 되었음.

###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48백만원이 증액된 389,019백만원으로
  -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88백만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이 증액되어 180,909백만원이 편성 되었음.
  -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400백만원이 증액되어 7,220백만원이며
  -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기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 4,828백만원이 증액되어 122,044백만원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08백만원이 증액된 19,095백만원이 편성 되었음.

###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48백만원이 증액된 389,019백만원으로
  - 정책사업비 6,574백만원(2.0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 △167백만원(△0.82%), 행정운영경비 △859백만원(△1.77%)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보건 863백만원(10.01%)  
 문화및관광 5,514백만원(9.14%)  
 농림해양수산분야 2,016백만원(3.37%) 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조직별 세출예산 구성은  
 안전건설과 61,099백만원(15.71%)  
 자치행정과 49,586백만원(12.75%)  
 문화관광과 47,047백만원(12.09%)  
 주민생활지원과 46,957백만원(12.0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자본지출 6,118백만원(3.22%)  
 경상이전 545백만원(0.55%)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감액 편성 되었음.

####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의 총규모는 64,37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5백만원(0.35%)이 증액된 것으로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9백만원(△4.78%)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0백만원(△17.82%)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13년 비점오염저감사업 반환금 33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규모에 변동이 없음.

## 5. 종합검토의견

###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확보분을 반영하였으며
- 조정교부금은 4개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48억 2,800만원을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억 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음.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 연도중 보조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였고, 경상경비 절감분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
- 재원별로는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58억원 중 보조사업은 7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당초 및 1회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고 3회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16개 사업에 2억 9천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나, 소액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1〉 예산 편성후 전액(100%) 삭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삭감예산액	비고
합계	16개 사업	291,400	
기획감사실	진부비행장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50,000	당초예산
문화관광과	강원자동차챌리대회 부담금	33,000	1회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청소년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	15,000	당초예산
	독거노인 응급안전장비 지원(보조)	33,000	당초예산
경제체육과	유치대상기업 타당성분석 및 사전검증 용역	4,000	1회추경
	강원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 지원	10,000	당초예산
환경위생과	오대천 생태습지 잡초제거 모니터링 인건비	14,700	당초예산
	음식물자원화 처리비용 산정용역	10,000	당초예산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 신축 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	15,000	1회추경
농축산과	축산인 한마음대회	5,000	당초예산
	젓소 비가림 운동장 설치 지원	35,000	당초예산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도비)	4,100	1회추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국고)	5,600	당초예산
	도축장 스팀소독기 설치(국고)	50,000	1회추경
기술지원과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제사업	5,000	당초예산
	신품종 종자공급 차액지원	2,000	당초예산

※ 당초예산 : 2015.12.18 의결, 1회추경 : 2016. 5.20 의결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71건에 640억원 임.
- 사유별로 살펴 보면
  - 절대공기 부족 : 88건 492억원
  - 사업시기 미도래 : 26건 62억원
  - 겨울축제 사업 : 20건 11억원
  - 토지협의등 기타 : 37건 75억원으로
- 사업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명시이월비가 많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건수	금 액	비율(%)	비고
합 계	171	64,055,010	100.00	
기 획 감 사 실	2	18,373	0.03	
문 화 관 광 과	55	18,828,578	29.45	
종 합 민 원 과	1	113,911	0.18	
자 치 행 정 과	2	609,711	0.95	
재 무 과	1	100,000	0.16	특별회계
경 제 체 육 과	10	5,637,722	8.82	특별회계포함
환 경 위 생 과	7	605,041	0.76	
산 림 과	5	346,512	0.54	
안 전 건 설 과	27	14,298,156	22.36	
도 시 주 택 과	11	2,998,444	4.69	
올 림 픽 추 진 단	2	156,600	0.24	
올 림 픽 운 영 과	8	4,109,816	6.43	
올 림 픽 시 설 과	7	3,152,027	4.93	
보 건 의 료 원	3	2,300,071	3.60	
농 축 산 과	11	2,432,746	3.80	
기 술 지 원 과	2	316,686	0.50	
상하수도사업소	17	8,030,616	12.56	특별회계포함

※ 2015년도 결산결과 명시이월 확정액 : 178건/ 439억원

○ 3회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 집행기한이 촉박함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최소 2회추경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V.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